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임차인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입주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사업자에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검사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 회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름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단, 정부시책 및 기타 임대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 및 방법은 향후 임대사업자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임차인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합니다.
-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 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5.06.26) 현재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명의 청약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해당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련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되고, 공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동·호수 배정 포함)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에 의거 임차인 모집 승인 대상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관리의 무대상이 아닙니다.
- 본 아파트는 타입별 1인 1건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자,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납부 후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자 변경 요청 시 임대사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단, 변경될 계약자의 자격 요건은 본 임차인모집공고 상 임차인 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입주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 또는 전대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임대사업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퇴거) 시 가전·가구 및 인테리어에 대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원상복구라 함은 파손·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임차인이 부착한 부속물을 철거하여 임대차계약 당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여야 합니다. 단, 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은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본 임차인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22998호(2025.06.26.)**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장성지구 A1블럭(장성동 20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29층 12개동 총 1,448세대(일반분양 655세대 포함) 중 민간임대 7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총 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59A	59.9965	23.8795	83.8760	44.0522	127.9282	439
59B	59.9790	23.4106	83.3896	44.0393	127.4289	354
합계						793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49%)					잔금(41%)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9%)	입주시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5.11.28	2026.04.30	2026.10.30	2027.03.31	2027.08.31	
59A	전층	439	299,900,000	10,000,000	1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6,991,000	122,959,000
59B	전층	354	299,900,000	10,000,000	1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6,991,000	122,959,000

임대조건

- 본 아파트의 임대무기간은 최대 10년 이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무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까지로 하며 중도 입주 등으로 임대무기간 만료일 이후에 2년 단위 임대기간 중 일부 일자가 남은 경우 남은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 한다.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요구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명도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의거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증사고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아래 표의 부담비율로 부담 납부합니다. 단,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 임대계약기간
보증대상	■ 임대보증금 전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보증료	■ 보증기관의 보증요율에 의함
부담주체	■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재가입 시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납부방법	■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액 선납 후, 임차인부담분 보증수수료 별도 청구 예정

- 임대주택에서 장래 임대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우선 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의 확정분양계약 등에 따른 분양대금(또는 매매예약금)은 HUG의 보증대상이 아니며 HUG는 임차인모집공고상의 임대보증금만을 약관에 따라 보증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임대료 증액 시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제1호)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첨 무효, 해약 및 퇴거 조치합니다.
- 임대차 기간 동안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인 경우 제외) 및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 대상입니다.(단,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임대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단, 정부시책 및 기타 임대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 및 방법은 향후 임대사업자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합니다.

유의사항

-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 및 피트가 있는 동은 그 해당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오니 홍보물, 견본주택 등으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에는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된 계좌 이외에 현장 수납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입)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 및 사용절차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3조를 적용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 시점에 따라 향후 임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임대 조건은 소급해서 적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3 청약신청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인 분
유의사항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기준입니다. -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 및 방법

신청 일시	2025.07.04.(금) ~ 07.07.(월) 10:00~ 17:00
신청 장소	당사 홈페이지(신분평더웨이시티.com)
신청 방법	홈페이지 청약하기 배너 ▶ 청약 안내 및 유의사항 체크 ▶ 개인정보활용 동의 ▶ 본인 인증 ▶ 청약신청 (신청 타입 선택, 주소지 등록 등) ▶ 청약신청 완료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수사항으로 휴대폰 명의는 반드시 청약자 본인 명의이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타입에 대하여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신청 가능하며, 동일 타입 내에서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59A타입 1건/59B타입 1건 청약 → 적격 / 59A타입 2건 청약 → 무효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신청자격 미달 등)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4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당첨자 선정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동호수 배정	공정 추첨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합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구분	일시	장소
당첨자 발표	2025.07.08(화) 14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신분평더웨이시티.com)

※ 당첨자 발표 시간은 사정에 의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체결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계약 체결	2025.07.09.(수) ~ 07.10.(목) 10:00~ 17:00	견본주택(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구비사항

구분	해당구분		구비사항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분,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전세대원), 세대원 구성사유 포함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상기 유의사항 참고)
	○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위임장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 견본주택 비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의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서명 계약 시 대리 접수 불가합니다.)

※ 계약 신청시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한 반환은 불가합니다.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임대보증금	하나은행	776-910043-77104	주택도시보증공사 납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임대차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임대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사업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단,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임대사업자가 당점자로 관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 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따릅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또는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준합니다.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의 49%(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10%(계약금 1차, 2차)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임대사업자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대출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임대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해제(해지)일 즉시 임대사업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액을 변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 금융기관 · 임대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계약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자 안내

■ 임차인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제48조의2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45일 전에 임차인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사전방문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 입주예정일 : 2028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완납, 거주 여부에 관련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임차인의 관리 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잔금을 납부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별도의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맘스레이션, 어린이놀이터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의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임대무기간은 10년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무기간 이내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임대무기간 중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4항에 따른 허가)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는 매입하는 자에게 포괄승계됩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공제 및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자(임차인)가 아파트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본 아파트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보증금/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보증금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득하였습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704-0050000호	₩140,361,000,000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 대상인 경우 공급 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포함)까지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 ※ 임대계약자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계약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임대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6 추가선택품목

추가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스타일링등)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 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0%	1차(10%)	2차(10%)	3차(10%)	60%	
					계약시	2025.11.28	2026.10.30	2027.08.31	입주시	
인테리어	친환경 무기질 도료	[안방+드레스룸 +침실1+침실2] 벽면	59A	2,950,000	295,000	295,000	295,000	295,000	1,770,000	■ 미선택시 : 없음
			59B	2,630,000	263,000	263,000	263,000	263,000	1,578,000	
	바닥 스타일링	거실+주방 +복도	59A	2,840,000	284,000	284,000	284,000	284,000	1,704,000	■ LX 에디톤 ■ 미선택시 : 강마루
			59B	2,70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620,000	
	벽면 스타일링 1	거실 TV뒷벽	전타입	1,970,000	197,000	197,000	197,000	197,000	1,182,000	■ 포세린타일 ■ 미선택시 : 벽지
	벽면 스타일링 2	거실 소파뒷벽	59A	1,970,000	197,000	197,000	197,000	197,000	1,182,000	■ 포세린타일 ■ 미선택시 : 벽지
			59B	2,330,000	233,000	233,000	233,000	233,000	1,398,000	
	조명 스타일링	거실+주방	59A	5,055,000	505,500	505,500	505,500	505,500	3,033,000	■ 우물천장 리니어조명 +마그네틱조명+라인보드 ■ 미선택시 : 거실,식탁 직부등
			59B	3,320,000	332,000	332,000	332,000	332,000	1,992,000	
	주방 스타일링	주방 벽 +주방 상판	59A	6,0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600,000	■ 벽/상판 (세라믹 타일) +상부장조명+팝업콘센트 ■ 미선택시 : 벽(타일)/상판(MMA)
			59B	4,526,000	452,600	452,600	452,600	452,600	2,715,600	
가구	현관중문	현관	전타입	1,750,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050,000	■ 3연동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없음
	복도 수납장	복도	59B	1,560,000	156,000	156,000	156,000	156,000	936,000	■ 미선택시 : 없음
	냉장고장 특화	주방	59A	2,735,000	273,500	273,500	273,500	273,500	1,641,000	■ 냉장고장+5단 수납장 ■ 미선택시 : 없음
			59B	2,414,000	241,400	241,400	241,400	241,400	1,448,400	
	주방액정TV	주방	전타입	5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00,000	■ 미선택시 : 없음
	고급 주방후드	주방	전타입	8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80,000	■ 트라이애드 / 실버 색상
	안방중문	안방 드레스룸	59A	1,750,00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1,050,000	■ 수동 슬라이딩 도어 ■ 미선택시 : 없음
			59B	1,520,000	152,000	152,000	152,000	152,000	912,000	
	화장대+드레스룸 가구	안방 드레스룸	59A	2,730,000	273,000	273,000	273,000	273,000	1,638,000	■ 화장대+시스템가구 ■ 미선택시 : 없음
			59B	2,310,000	231,000	231,000	231,000	231,000	1,386,000	
불박이장	침실1	전타입	1,640,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984,000	■ 미선택시 : 없음	

■ 추가선택품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 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0%	1차(10%)	2차(10%)	3차(10%)	60%	
					계약시	2025.11.28	2026.10.30	2027.08.31	입주시	
가전	시스템에어컨(일반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	전타입	6,700,000	670,000	670,000	670,000	670,000	4,020,000	■ 삼성전자 / 4대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주방	전타입	5,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3,000,000	■ 삼성전자 비스포크 1도어
	3구 인덕션	주방	전타입	750,000	75,000	75,000	75,000	75,000	450,000	■ 삼성전자
	전기오븐	주방	전타입	45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70,000	■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주방	전타입	1,0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 삼성전자(12인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단,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임대사업자에 귀속됩니다.(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또는 입주 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가전)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입주 후 임대차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환불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이와 관련하여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추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아 래 -

입주 후 '추가선택품목(가전)-시스템에어컨'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거주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는 임차인이 아파트에 입주한 당해년도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년도까지로 한다)를 공제한 후 반환	
임대차 기간 중 n년차 거주 후 퇴거 시 '추가선택품목(가전)-시스템에어컨' 선택시 6,700,000원	
[계산]	- 입주 후 ~ 2년 이내 기준 : 6,700,000원 - { 6,700,000원 × 20% } = 5,360,000원
	- 입주 후 ~ 4년 이내 기준 : 6,700,000원 - { 6,700,000원 × 40% } = 4,020,000원
	- 입주 후 ~ 6년 이내 기준 : 6,700,000원 - { 6,700,000원 × 60% } = 2,680,000원
	- 입주 후 ~ 8년 이내 기준 : 6,700,000원 - { 6,700,000원 × 80% } = 1,340,000원
	- 입주 후 ~ 10년 이내 기준 : 6,700,000원 - { 6,700,000원 × 100% } = 0원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방중문'(안방 드레스룸 수동 슬라이딩 도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가구도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 금액 또는 납부 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가전)'(시스템에어컨 및 주방가전류)은 시공자와 무관한 별도의 계약 품목으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시공자에 민원 및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청약·계약하셔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 각 1개소만 설치되며, 기타 침실 및 알파룸 등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에는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거실 스탠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을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조사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벽걸이/스탠드 에어컨을 위한 별도 매립배관이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구성 내용에 맞게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해야 냉장고장 및 수납장이 설치되며,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공간만 제공됩니다.
- '냉장+냉동+김치냉장고' 및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추가선택품목은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추가선택품목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됩니다.(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매립호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오븐'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일반 주방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3구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3구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BNK경남은행	207-0210-6321-06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임대보증금',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임대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사업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단,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 기타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임대사업자 및 시공자

구분	임대사업자(사업주체)	시공자
상호	(유)에이치엠서빈	제일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23, 5층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번호	110114-0260684	135811-0093658

감리관련(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휴먼텍코리아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케이씨엔지니어링	덕원기술단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감리금액	4,300,063,900원	968,730,900원	1,214,468,000원	334,400,000원

설계관련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0.213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2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 부분 설계 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 부분 설계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기준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지 소방 및 제 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 부문 설계 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5.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정동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1-10-1, 1-11-1, 1-12-1, 1-13-1, 1-14-1, 1-15-1, 1-16-1, 1-17-1, 1-18-1, 1-19-1, 1-20-1, 1-21-1, 1-22-1, 1-23-1, 1-24-1, 1-25-1, 1-26-1, 1-27-1, 1-28-1, 1-29-1, 1-30-1, 1-31-1, 1-32-1, 1-33-1, 1-34-1, 1-35-1, 1-36-1, 1-37-1, 1-38-1, 1-39-1, 1-40-1, 1-41-1, 1-42-1, 1-43-1, 1-44-1, 1-45-1, 1-46-1, 1-47-1, 1-48-1, 1-49-1, 1-50-1, 1-51-1, 1-52-1, 1-53-1, 1-54-1, 1-55-1, 1-56-1, 1-57-1, 1-58-1, 1-59-1, 1-60-1, 1-61-1, 1-62-1, 1-63-1, 1-64-1, 1-65-1, 1-66-1, 1-67-1, 1-68-1, 1-69-1, 1-70-1, 1-71-1, 1-72-1, 1-73-1, 1-74-1, 1-75-1, 1-76-1, 1-77-1, 1-78-1, 1-79-1, 1-80-1, 1-81-1, 1-82-1, 1-83-1, 1-84-1, 1-85-1, 1-86-1, 1-87-1, 1-88-1, 1-89-1, 1-90-1, 1-91-1, 1-92-1, 1-93-1, 1-94-1, 1-95-1, 1-96-1, 1-97-1, 1-98-1, 1-99-1, 1-100-1, 1-101-1, 1-102-1, 1-103-1, 1-104-1, 1-105-1, 1-106-1, 1-107-1, 1-108-1, 1-109-1, 1-110-1, 1-111-1, 1-112-1, 1-113-1, 1-114-1, 1-115-1, 1-116-1, 1-117-1, 1-118-1, 1-119-1, 1-120-1, 1-121-1, 1-122-1, 1-123-1, 1-124-1, 1-125-1, 1-126-1, 1-127-1, 1-128-1, 1-129-1, 1-130-1, 1-131-1, 1-132-1, 1-133-1, 1-134-1, 1-135-1, 1-136-1, 1-137-1, 1-138-1, 1-139-1, 1-140-1, 1-141-1, 1-142-1, 1-143-1, 1-144-1, 1-145-1, 1-146-1, 1-147-1, 1-148-1, 1-149-1, 1-150-1, 1-151-1, 1-152-1, 1-153-1, 1-154-1, 1-155-1, 1-156-1, 1-157-1, 1-158-1, 1-159-1, 1-160-1, 1-161-1, 1-162-1, 1-163-1, 1-164-1, 1-165-1, 1-166-1, 1-167-1, 1-168-1, 1-169-1, 1-170-1, 1-171-1, 1-172-1, 1-173-1, 1-174-1, 1-175-1, 1-176-1, 1-177-1, 1-178-1, 1-179-1, 1-180-1, 1-181-1, 1-182-1, 1-183-1, 1-184-1, 1-185-1, 1-186-1, 1-187-1, 1-188-1, 1-189-1, 1-190-1, 1-191-1, 1-192-1, 1-193-1, 1-194-1, 1-195-1, 1-196-1, 1-197-1, 1-198-1, 1-199-1, 1-200-1, 1-201-1, 1-202-1, 1-203-1, 1-204-1, 1-205-1, 1-206-1, 1-207-1, 1-208-1, 1-209-1, 1-210-1, 1-211-1, 1-212-1, 1-213-1, 1-214-1, 1-215-1, 1-216-1, 1-217-1, 1-218-1, 1-219-1, 1-220-1, 1-221-1, 1-222-1, 1-223-1, 1-224-1, 1-225-1, 1-226-1, 1-227-1, 1-228-1, 1-229-1, 1-230-1, 1-231-1, 1-232-1, 1-233-1, 1-234-1, 1-235-1, 1-236-1, 1-237-1, 1-238-1, 1-239-1, 1-240-1, 1-241-1, 1-242-1, 1-243-1, 1-244-1, 1-245-1, 1-246-1, 1-247-1, 1-248-1, 1-249-1, 1-250-1, 1-251-1, 1-252-1, 1-253-1, 1-254-1, 1-255-1, 1-256-1, 1-257-1, 1-258-1, 1-259-1, 1-260-1, 1-261-1, 1-262-1, 1-263-1, 1-264-1, 1-265-1, 1-266-1, 1-267-1, 1-268-1, 1-269-1, 1-270-1, 1-271-1, 1-272-1, 1-273-1, 1-274-1, 1-275-1, 1-276-1, 1-277-1, 1-278-1, 1-279-1, 1-280-1, 1-281-1, 1-282-1, 1-283-1, 1-284-1, 1-285-1, 1-286-1, 1-287-1, 1-288-1, 1-289-1, 1-290-1, 1-291-1, 1-292-1, 1-293-1, 1-294-1, 1-295-1, 1-296-1, 1-297-1, 1-298-1, 1-299-1, 1-300-1, 1-301-1, 1-302-1, 1-303-1, 1-304-1, 1-305-1, 1-306-1, 1-307-1, 1-308-1, 1-309-1, 1-310-1, 1-311-1, 1-312-1, 1-313-1, 1-314-1, 1-315-1, 1-316-1, 1-317-1, 1-318-1, 1-319-1, 1-320-1, 1-321-1, 1-322-1, 1-323-1, 1-324-1, 1-325-1, 1-326-1, 1-327-1, 1-328-1, 1-329-1, 1-330-1, 1-331-1, 1-332-1, 1-333-1, 1-334-1, 1-335-1, 1-336-1, 1-337-1, 1-338-1, 1-339-1, 1-340-1, 1-341-1, 1-342-1, 1-343-1, 1-344-1, 1-345-1, 1-346-1, 1-347-1, 1-348-1, 1-349-1, 1-350-1, 1-351-1, 1-352-1, 1-353-1, 1-354-1, 1-355-1, 1-356-1, 1-357-1, 1-358-1, 1-359-1, 1-360-1, 1-361-1, 1-362-1, 1-363-1, 1-364-1, 1-365-1, 1-366-1, 1-367-1, 1-368-1, 1-369-1, 1-370-1, 1-371-1, 1-372-1, 1-373-1, 1-374-1, 1-375-1, 1-376-1, 1-377-1, 1-378-1, 1-379-1, 1-380-1, 1-381-1, 1-382-1, 1-383-1, 1-384-1, 1-385-1, 1-386-1, 1-387-1, 1-388-1, 1-389-1, 1-390-1, 1-391-1, 1-392-1, 1-393-1, 1-394-1, 1-395-1, 1-396-1, 1-397-1, 1-398-1, 1-399-1, 1-400-1, 1-401-1, 1-402-1, 1-403-1, 1-404-1, 1-405-1, 1-406-1, 1-407-1, 1-408-1, 1-409-1, 1-410-1, 1-411-1, 1-412-1, 1-413-1, 1-414-1, 1-415-1, 1-416-1, 1-417-1, 1-418-1, 1-419-1, 1-420-1, 1-421-1, 1-422-1, 1-423-1, 1-424-1, 1-425-1, 1-426-1, 1-427-1, 1-428-1, 1-429-1, 1-430-1, 1-431-1, 1-432-1, 1-433-1, 1-434-1, 1-435-1, 1-436-1, 1-437-1, 1-438-1, 1-439-1, 1-440-1, 1-441-1, 1-442-1, 1-443-1, 1-444-1, 1-445-1, 1-446-1, 1-447-1, 1-448-1, 1-449-1, 1-450-1, 1-451-1, 1-452-1, 1-453-1, 1-454-1, 1-455-1, 1-456-1, 1-457-1, 1-458-1, 1-459-1, 1-460-1, 1-461-1, 1-462-1, 1-463-1, 1-464-1, 1-465-1, 1-466-1, 1-467-1, 1-468-1, 1-469-1, 1-470-1, 1-471-1, 1-472-1, 1-473-1, 1-474-1, 1-475-1, 1-476-1, 1-477-1, 1-478-1, 1-479-1, 1-480-1, 1-481-1, 1-482-1, 1-483-1, 1-484-1, 1-485-1, 1-486-1, 1-487-1, 1-488-1, 1-489-1, 1-490-1, 1-491-1, 1-492-1, 1-493-1, 1-494-1, 1-495-1, 1-496-1, 1-497-1, 1-498-1, 1-499-1, 1-500-1, 1-501-1, 1-502-1, 1-503-1, 1-504-1, 1-505-1, 1-506-1, 1-507-1, 1-508-1, 1-509-1, 1-510-1, 1-511-1, 1-512-1, 1-513-1, 1-514-1, 1-515-1, 1-516-1, 1-517-1, 1-518-1, 1-519-1, 1-520-1, 1-521-1, 1-522-1, 1-523-1, 1-524-1, 1-525-1, 1-526-1, 1-527-1, 1-528-1, 1-529-1, 1-530-1, 1-531-1, 1-532-1, 1-533-1, 1-534-1, 1-535-1, 1-536-1, 1-537-1, 1-538-1, 1-539-1, 1-540-1, 1-541-1, 1-542-1, 1-543-1, 1-544-1, 1-545-1, 1-546-1, 1-547-1, 1-548-1, 1-549-1, 1-550-1, 1-551-1, 1-552-1, 1-553-1, 1-554-1, 1-555-1, 1-556-1, 1-557-1, 1-558-1, 1-559-1, 1-560-1, 1-561-1, 1-562-1, 1-563-1, 1-564-1, 1-565-1, 1-566-1, 1-567-1, 1-568-1, 1-569-1, 1-570-1, 1-571-1, 1-572-1, 1-573-1, 1-574-1, 1-575-1, 1-576-1, 1-577-1, 1-578-1, 1-579-1, 1-580-1, 1-581-1, 1-582-1, 1-583-1, 1-584-1, 1-585-1, 1-586-1, 1-587-1, 1-588-1, 1-589-1, 1-590-1, 1-591-1, 1-592-1, 1-593-1, 1-594-1, 1-595-1, 1-596-1, 1-597-1, 1-598-1, 1-599-1, 1-600-1, 1-601-1, 1-602-1, 1-603-1, 1-604-1, 1-605-1, 1-606-1, 1-607-1, 1-608-1, 1-609-1, 1-610-1, 1-611-1, 1-612-1, 1-613-1, 1-614-1, 1-615-1, 1-616-1, 1-617-1, 1-618-1, 1-619-1, 1-620-1, 1-621-1, 1-622-1, 1-623-1, 1-624-1, 1-625-1, 1-626-1, 1-627-1, 1-628-1, 1-629-1, 1-630-1, 1-631-1, 1-632-1, 1-633-1, 1-634-1, 1-635-1, 1-636-1, 1-637-1, 1-638-1, 1-639-1, 1-640-1, 1-641-1, 1-642-1, 1-643-1, 1-644-1, 1-645-1, 1-646-1, 1-647-1, 1-648-1, 1-649-1, 1-650-1, 1-651-1, 1-652-1, 1-653-1, 1-654-1, 1-655-1, 1-656-1, 1-657-1, 1-658-1, 1-659-1, 1-660-1, 1-661-1, 1-662-1, 1-663-1, 1-664-1, 1-665-1, 1-666-1, 1-667-1, 1-668-1, 1-669-1, 1-670-1, 1-671-1, 1-672-1, 1-673-1, 1-674-1, 1-675-1, 1-676-1, 1-677-1, 1-678-1, 1-679-1, 1-680-1, 1-681-1, 1-682-1, 1-683-1, 1-684-1, 1-685-1, 1-686-1, 1-687-1, 1-688-1, 1-689-1, 1-690-1, 1-691-1, 1-692-1, 1-693-1, 1-694-1, 1-695-1, 1-696-1, 1-697-1, 1-698-1, 1-699-1, 1-700-1, 1-701-1, 1-702-1, 1-703-1, 1-704-1, 1-705-1, 1-706-1, 1-707-1, 1-708-1, 1-709-1, 1-710-1, 1-711-1, 1-712-1, 1-713-1, 1-714-1, 1-715-1, 1-716-1, 1-717-1, 1-718-1, 1-719-1, 1-720-1, 1-721-1, 1-722-1, 1-723-1, 1-724-1, 1-725-1, 1-726-1, 1-727-1, 1-728-1, 1-729-1, 1-730-1, 1-731-1, 1-732-1, 1-733-1, 1-734-1, 1-735-1, 1-736-1, 1-737-1, 1-738-1, 1-739-1, 1-740-1, 1-741-1, 1-742-1, 1-743-1, 1-744-1, 1-745-1, 1-746-1, 1-747-1, 1-748-1, 1-749-1, 1-750-1, 1-751-1, 1-752-1, 1-753-1, 1-754-1, 1-755-1, 1-756-1, 1-757-1, 1-758-1, 1-759-1, 1-760-1, 1-761-1, 1-762-1, 1-763-1, 1-764-1, 1-765-1, 1-766-1, 1-767-1, 1-768-1, 1-769-1, 1-770-1, 1-771-1, 1-772-1, 1-773-1, 1-774-1, 1-775-1, 1-776-1, 1-777-1, 1-778-1, 1-779-1, 1-780-1, 1-781-1, 1-782-1, 1-783-1, 1-784-1, 1-785-1, 1-786-1, 1-787-1, 1-788-1, 1-789-1, 1-790-1, 1-791-1, 1-792-1, 1-793-1, 1-794-1, 1-795-1, 1-796-1, 1-797-1, 1-798-1, 1-799-1, 1-800-1, 1-801-1, 1-802-1, 1-803-1, 1-804-1, 1-805-1, 1-806-1, 1-807-1, 1-808-1, 1-809-1, 1-810-1, 1-811-1, 1-812-1, 1-813-1, 1-814-1, 1-815-1, 1-816-1, 1-817-1, 1-818-1, 1-819-1, 1-820-1, 1-821-1, 1-822-1, 1-823-1, 1-824-1, 1-825-1, 1-826-1, 1-827-1, 1-828-1, 1-829-1, 1-830-1, 1-831-1, 1-832-1, 1-833-1, 1-834-1, 1-835-1, 1-836-1, 1-837-1, 1-838-1, 1-839-1, 1-840-1, 1-841-1, 1-842-1, 1-843-1, 1-844-1, 1-845-1, 1-846-1, 1-847-1, 1-848-1, 1-849-1, 1-850-1, 1-851-1, 1-852-1, 1-853-1, 1-854-1, 1-855-1, 1-856-1, 1-857-1, 1-858-1, 1-859-1, 1-860-1, 1-861-1, 1-862-1, 1-863-1, 1-864-1, 1-865-1, 1-866-1, 1-867-1, 1-868-1, 1-869-1, 1-870-1, 1-871-1, 1-872-1, 1-873-1, 1-874-1, 1-875-1, 1-876-1, 1-877-1, 1-878-1, 1-879-1, 1-880-1, 1-881-1, 1-882-1, 1-883-1, 1-884-1, 1-885-1, 1-886-1, 1-887-1, 1-888-1, 1-889-1, 1-890-1, 1-891-1, 1-892-1, 1-893-1, 1-894-1, 1-895-1, 1-896-1, 1-897-1, 1-898-1, 1-899-1, 1-900-1, 1-901-1, 1-902-1, 1-903-1, 1-904-1, 1-905-1, 1-906-1, 1-907-1, 1-908-1, 1-909-1, 1-910-1, 1-911-1, 1-912-1, 1-913-1, 1-914-1, 1-915-1, 1-916-1, 1-917-1, 1-918-1, 1-919-1, 1-920-1, 1-921-1, 1-922-1, 1-923-1, 1-924-1, 1-925-1, 1-926-1, 1-927-1, 1-928-1, 1-929-1, 1-930-1, 1-931-1, 1-932-1, 1-933-1, 1-934-1, 1-935-1, 1-936-1, 1-937-1, 1-938-1, 1-939-1, 1-940-1, 1-941-1, 1-942-1, 1-943-1, 1-944-1, 1-945-1, 1-946-1, 1-947-1, 1-948-1, 1-949-1, 1-950-1, 1-951-1, 1-952-1, 1-953-1, 1-954-1, 1-955-1, 1-956-1, 1-957-1, 1-958-1, 1-959-1, 1-960-1, 1-961-1, 1-962-1, 1-963-1, 1-964-1, 1-965-1, 1-966-1, 1-967-1, 1-968-1, 1-969-1, 1-970-1, 1-971-1, 1-972-1, 1-973-1, 1-974-1, 1-975-1, 1-976-1, 1-977-1, 1-978-1, 1-979-1, 1-980-1, 1-981-1, 1-982-1, 1-983-1, 1-984-1, 1-985-1, 1-986-1, 1-987-1, 1-988-1, 1-989-1, 1-990-1, 1-991-1, 1-992-1, 1-993-1, 1-994-1, 1-995-1, 1-996-1, 1-997-1, 1-998-1, 1-999-1, 1-1000-1, 1-1001-1, 1-1002-1, 1-1003-1, 1-1004-1, 1-1005-1, 1-1006-1, 1-1007-1, 1-1008-1, 1-1009-1, 1-1010-1, 1-1011-1, 1-1012-1, 1-1013-1, 1-1014-1, 1-1015-1, 1-1016-1, 1-1017-1, 1-1018-1, 1-1019-1, 1-1020-1, 1-1021-1, 1-1022-1, 1-1023-1, 1-1024-1, 1-1025-1, 1-1026-1, 1-1027-1, 1-1028-1, 1-1029-1, 1-1030-1, 1-1031-1, 1-1032-1, 1-1033-1, 1-1034-1, 1-1035-1, 1-1036-1, 1-1037-1, 1-1038-1, 1-1039-1, 1-1040-1, 1-1041-1, 1-1042-1, 1-1043-1, 1-1044-1, 1-1045-1, 1-1046-1, 1-1047-1, 1-1048-1, 1-1049-1, 1-1050-1, 1-1051-1, 1-1052-1, 1-1053-1, 1-1054-1, 1-1055-1, 1-1056-1, 1-1057-1, 1-1058-1, 1-1059-1, 1-1060-1, 1-1061-1, 1-1062-1, 1-1063-1, 1-1064-1, 1-1065-1, 1-1066-1, 1-1067-1, 1-1068-1, 1-1069-1, 1-1070-1, 1-1071-1, 1-1072-1, 1-1073-1, 1-1074-1, 1-1075-1, 1-1076-1, 1-1077-1, 1-1078-1, 1-1079-1, 1-1080-1, 1-1081-1, 1-1082-1, 1-1083-1, 1-1084-1, 1-1085-1, 1-1086-1, 1-1087-1, 1-1088-1, 1-1089-1, 1-1090-1, 1-1091-1, 1-1092-1, 1-1093-1, 1-1094-1, 1-1095-1, 1-1096-1, 1-1097-1, 1-1098-1, 1-1099-1, 1-1100-1, 1-1101-1, 1-1102-1, 1-1103-1, 1-1104-1, 1-1105-1, 1-1106-1, 1-1107-1, 1-1108-1, 1-1109-1, 1-1110-1, 1-1111-1, 1-1112-1, 1-1113-1, 1-1114-1, 1-1115-1, 1-1116-1, 1-1117-1, 1-1118-1, 1-1119-1, 1-1120-1, 1-1121-1, 1-1122-1, 1-1123-1, 1-1124-1, 1-1125-1, 1-1126-1, 1-1127-1, 1-1128-1, 1-1129-1, 1-1130-1, 1-1131-1, 1-1132-1, 1-1133-1, 1-1134-1, 1-1135-1, 1-1136-1, 1-1137-1, 1-1138-1, 1-1139-1, 1-1140-1, 1-1141-1, 1-1142-1, 1-1143-1, 1-1144-1, 1-1145-1, 1-1146-1, 1-1147-1, 1-1148-1, 1-1149-1, 1-1150-1, 1-1151-1, 1-1152-1, 1-1153-1, 1-1154-1, 1-1155-1, 1-1156-1, 1-1157-1, 1-1158-1, 1-1159-1, 1-1160-1, 1-1161-1, 1-1162-1, 1-1163-1, 1-1164-1, 1-1165-1, 1-1166-1, 1-1167-1, 1-1168-1, 1-1169-1, 1-1170-1, 1-1171-1, 1-1172-1, 1-1173-1, 1-1174-1, 1-1175-1, 1-1176-1, 1-1177-1, 1-1178-1, 1-1179-1, 1-1180-1, 1-1181-1, 1-1182-1, 1-1183-1, 1-1184-1, 1-1185-1, 1-1186-1, 1-1187-1, 1-1188-1, 1-1189-1, 1-1190-1, 1-1191-1, 1-1192-1, 1-1193-1, 1-1194-1, 1-1195-1, 1-1196-1, 1-1197-1, 1-1198-1, 1-1199-1, 1-1200-1, 1-1201-1, 1-1202-1, 1-1203-1, 1-1204-1, 1-1205-1, 1-1206-1, 1-1207-1, 1-1208-1, 1-1209-1, 1-1210-1, 1-1211-1, 1-1212-1, 1-1213-1, 1-1214-1, 1-1215-1, 1-1216-1, 1-1217-1, 1-1218-1, 1-1219-1, 1-1220-1, 1-1221-1, 1-1222-1, 1-1223-1, 1-1224-1, 1-1225-1, 1-1226-1, 1-1227-1, 1-1228-1, 1-1229-1, 1-1230-1, 1-1231-1, 1-1232-1, 1-1233-1, 1-1234-1, 1-1235-1, 1-1236-1, 1-1237-1, 1-1238-1, 1-1239-1, 1-1240-1, 1-1241-1, 1-1242-1, 1-1243-1, 1-1244-1, 1-1245-1, 1-1246-1, 1-1247-1, 1-1248-1, 1-1249-1, 1-1250-1, 1-1251-1, 1-1252-1, 1-1253-1, 1-1254-1, 1-1255-1, 1-1256-1, 1-1257-1, 1-1258-1, 1-1259-1, 1-1260-1, 1-1261-1, 1-1262-1, 1-1263-1, 1-1264-1, 1-1265-1, 1-1266-1, 1-1267-1, 1-1268-1, 1-1269-1, 1-1270-1, 1-1271-1, 1-1272-1, 1-1273-1, 1-1274-1, 1-1275-1, 1-1276-1, 1-1277-1, 1-1278-1, 1-1279-1, 1-1280-1, 1-1281-1, 1-1282-1, 1-1283-1, 3	

유의사항

■ 기본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필지 구분 없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에 적용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06동~111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 분양 세대가 배치되어 있고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외부공간, 부대시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임대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임대차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임대사업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사업자와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임차인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임차인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학교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본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임차인 및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초등학교 개교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불일치에 따른 학생 임시배치는 입주시기로부터 1년전 인근 학교의 학생 배치 현황 추이를 살펴 임시 배치교를 검토할 예정이며, 임시배치 기간 동안 원거리 위치한 초등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학교 신설(개교)시 까지 학생통학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학교의 경우 사업지로부터 도보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계약시 이점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단지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와 연결된 보행자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은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 레벌차 극복을 위해 경계부에 일부 설계 변경(외부계단, 토목 옹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교목식재가 계획되지 않아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는 관련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ELEV 기계실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실외기 설치 위치와 인접한 세대는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설치위치, 크기, 형태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0동 인근에 위치한 보행육교는 A1블럭과 A2블럭을 연계하는 보행육교로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A2블럭 대지 내 교량부분을 제외한 모든부분은 A1블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육교 공사는 A2블럭 공사현황에 따라 A1블럭 준공 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발생, 조망권침해 등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입면디자인,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동간거리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집적소,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건물 외부장식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환풍/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창용 구조물, 항공장애물,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등),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단지 외부에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위락시설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분명이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시설사용자들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규격,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 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의 형태 및 디자인,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 유입 대책을 위해 창 및 문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 보행진입 개선을 위해 램프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지붕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패널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이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지하1층), 지상층 및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10동 지붕층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어, PC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우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LG U+)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태양광 집광판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빔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은 구조 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옥외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이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후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나 시공자에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이나 중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 설계변경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무관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 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준공 시 도로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단지 남측(2순환로와 면하는 부분) 내 또는 외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 하신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단지 내 방음벽 설치시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최종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과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2,045대(지하1층 985대, 지하2층 1,060대),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8대, 총 2,05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 가족배려, 확장형, 장애인, 소형 주차면 및 콘센트형, 완속충전형, 급속충전형 전기차 주차면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주차구역의 위치,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 개소 이상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 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주차구획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기동 및 벽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운전석 및 보조석) 시 간섭이 발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보행 동선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랜치 시공 시 시공 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및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 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임차인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가족배려주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니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위세대	■ 세대 반자높이는 1층세대(필로티 상부세대는 2층으로 본다.)가 2.5m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세대의 반자높이는 2.3m로 설계되어 있어 세대 내부 마감(창호, 주방 상부장, 수납장 및 배관 등)의 높이 및 형태는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하고자 하는 동과 호실의 반자높이를 분명히 인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류 등(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류 등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실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 공간 유효 면적과 천장고, 바닥마감 높이가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건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으니, 입주 후 설치 위치를 실측한 후 가전기기와 집기 등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침실 및 다용도실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건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임차인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임차인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우물천장, 가구와 선반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상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상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재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추가선택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만 제

구분	내용
	공되며, 이는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미제공됩니다. 별도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벽면 마무리 마감으로 시멘트 몰탈 적용 시 몰탈 바를 총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욕실장, 거울,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는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바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이 설치되는 뒷벽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거나 페타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임의로 전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 불량이 발생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시공자에게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등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방충망의 색상과 제원, 규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발코니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미디움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임차인 분입니다. ■ 화장실 천장 또는 벽체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또는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분전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랜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등의 설치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별도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대피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며 출입문에 시건 장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피난구 개방시 해당 세대와 하부 세대에 경보 및 관리사무소(방재시스템)에 연동되며 하부 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상이한 사이즈의 욕실 계획으로 벽,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쪽타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깊이가 세탁기(가전)보다 얇거나 세탁수전 설치로 인하여 세탁기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범위는 세탁기 설치공간 확보, 벽체 및 도어 간섭 개선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 세탁단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벽,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또는 분절 부분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사양, 길이, 폭,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내 하드웨어 형태 및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안방에 설치되는 파우더장은 방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상부장 또는 주방상부장 내부 일부구간에 SMPS 커버(전기 옵션 등기구 조작함)가 설치됩니다. ■가전/가구 선택형에 따라 가구 형태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방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상부장 상단 또는 일부 내부 구간에 안정기가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입별 현관문폭 사이즈와 개방각도, 동별 현관 외부 엘리베이터 홀 유효공간이 상이하오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약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주방가구 상부에 가스배관 또는 밸브의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비내력 벽체는 ALC블럭벽체,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정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임차인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난방 온수 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 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통합콘센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덕션 용량은 설계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임차인이 추후 설계 용량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 용량 증설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일부 세대는 공용부, 전유부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바닥 배수구, 환기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되며, 세대 현관, 실외기실, 대피실,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하며, 천장 석고보드 부위와 벽체 석고보드 부위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 바닥재는 강마루이며 스티프닝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전기	■기계/전기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약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입니다.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건본주택 유의사항

구분	내용
건본주택	■ 「주택법」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승인 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등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별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 스톤, 석재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59A타입만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 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임차인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전자식 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실제 색상, 패턴이 상이할 수 있고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건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1층세대(필로티 상부세대는 2층으로 본다.) 기준으로 반자높이 2.5m로 시공된 것이며, 그 외에 층의 세대 반자높이는 2.3m로 설계되어 있으니 계약하고자 하는 동과 호실의 반자높이를 분명히 인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홍보물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에 이용된 단지 이미지, 단지모형, 세대모형, CG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미지에 표현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임차인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

구분	내용
	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내용과 임차인모집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임차인모집공고문과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